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7. 11. 10.

총무계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1월 3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4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'97. 11. 10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홍 기

가. 개정이유

경찰서 파견 방범원이 전원 구청으로 복귀 구청업무 수행함에 따라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구청업무 수행에 적합한 명칭으로 직명을 변경, 사기전작 및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개정글자

-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 조항 삭제 (안 제5조)
-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 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중이던 방범원들이 1997년 10월 1일을 기해 전원 구청으로 복귀하여 구청업무 수행함에 따라 방범원의 명칭을 교통지도·단속등 현업부서 외근업무수행에 적합한 지도원으로 변경하고,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
- 그동안 국가업무인 경찰치안업무를 보조하는 방범원의 인건비등을 구가 전액 부담하는등

불합리한 요인은 일단 제거되었으나 현행 53세로 되어있는 근무상한 연령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김세창 위원) : 경찰서 파견 방법원이 구청으로 복귀후 지급받는 수당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?
- 답변요지(홍 기 총무과장) : 방법원으로 근무시에는 야간 방법활동에 따른 야간 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야간근무수당이 없어 전과 비교하면 약 30여만원이 적어졌으나 반면에 야간근무가 없으므로 근무환경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됨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공덕제3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(안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1997. 10.

마 포 구 청 장

1. 건 명 : 공덕제3 주택재개발구역지정

2. 제안이유 : 공덕제3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것임.

3. 구역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공덕동 188-1 일대
- 면 적 : 28,624.04㎡ (국유지:801.2㎡, 구유지:1,998.71㎡, 사유지:25,824.13㎡)
- 정비대상 건축물 : 349동 (유허가 309동, 무허가 40동)

4. 추진경위

- 재개발구역지정 신청 (주민 → 구) : '97. 6. 11
- 관련부서 협의 : 97. 7. 2 ~ '97. 8. 18 서부교육청외 11개부서
- 도시계획안 공람공고
 - 기 간 : 1997. 9. 27 ~ 1997. 10. 14
 - 내 용 :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 - 공고방법 : 일간신문 게재공고 (문화일보, 내외경제신문)
 - 결 과 : 의견제출(5건)-재개발반대
- 공람심사위원회개최
 - 일 시 : 1997. 10. 24(금) 14:00
 - 참 석 자 : 도시정비국장외 6인
 - 결 과 : 불채택

5 구역지정 동의현황

| 구 분 | 대 상 | 동 의 | 동 의 율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토지 소유자 | 396 인 | 300 인 | 75.76 % | 국공유지 제외 |
| 건물 소유자 | 374 인 | 287 인 | 76.74 % | |

6. 사업계획

○ 공공시설(도로)

| 결정 구분 | 규 모 | | | | 기 능 | 사용 형태 | 연장 (M) | 위 치 |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노 형 | 세분류 | 번 호 | 폭원 (M) | | | | 기 점 | 종 점 | |
| 신설 | 소로 | 3류 | 1 | 6 | 국지 도로 | 일반 도로 | 10 | 공덕동 122-9 | 아현동 649-4 | 도로 확폭 |
| 신설 | 소로 | 3류 | 2 | 6 | 국지 도로 | 일반 도로 | 24 | 공덕동 185-40 | 공덕동 188-123 | 도로 확폭 |
| 신설 | 소로 | 3류 | 3 | 4 | 국지 도로 | 일반 도로 | 94 | 아현동 649-1 | 공덕동 122-149 | 도로 확폭 |
| 신설 | 소로 | 3류 | 4 | 4 | 국지 도로 | 일반 도로 | 46 | 공덕동 175-178 | 공덕동 175-163 | 도로 확폭 |
| 신설 | 소로 | 3류 | 5 | 4 | 국지 도로 | 일반 도로 | 14 | 공덕동 182-23 | 공덕동 182-25 | 도로 확폭 |

○ 건축계획

| 결정 구분 | 구 역 구 분 | |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| | 위 치 | 주 원 용 도 | 건 폐 율 (%) | 용 적 율 (%) | 층 수(층) 높이(m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명칭 | 면적(㎡) | 명칭 | 면적(㎡) | | | | | |
| 신축 | 공 덕 3구역 | 28,624.04 | 택지(1) | 28,129.99 | 공덕동 188-1번지 일 대 | 공동주택 (아파트) | 20% 이하 | 250% 이하 | 22층이하 65m이하 |
| | | | 택지(2) | 203.98 | | | | | |
| | | | 도 로 | 290.07 | | | | | |
|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: 전용면적 115㎡ 이하 국민주택의 건설비용 : 총건설세대수의 80% 이상 전용면적 60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용 : 총건설세대수의 50% 이상 | | | | | | |
| 임대주택을 건설 하지 않는 사유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 관내 잔여 임대주택 공급 | | | | | | |
| 건축시설의 건축 선에 관한 계획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의함 | | |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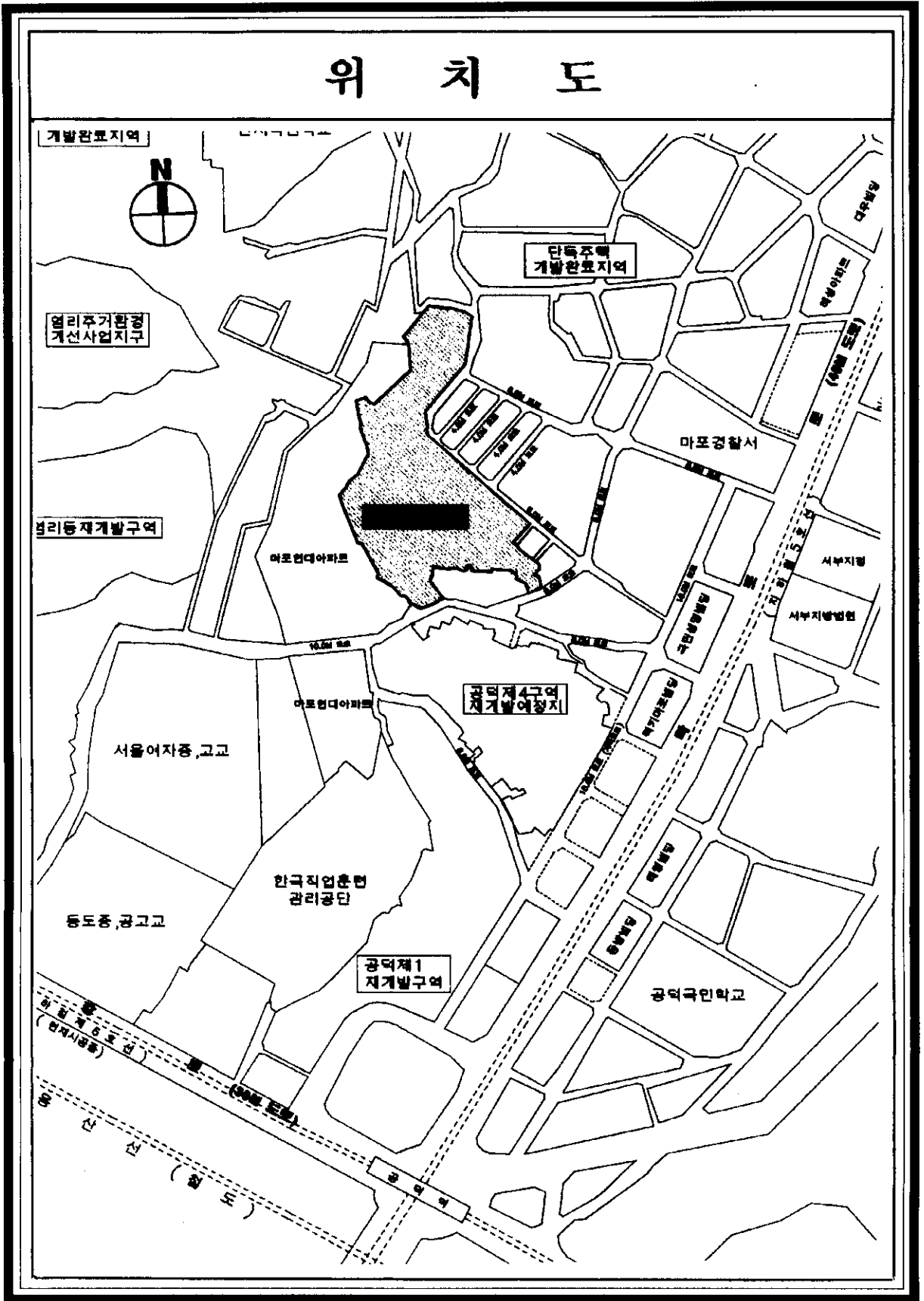
7. 입안사유

- 당해 지역은 대부분이 195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·불량한 건축물로서 지형적으로 구릉지에 주택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공공시설(도로)정비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구조상,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.

8. 첨부 : 1) 위치도 1부

- 2) 토지소유 구별도 1부
- 3) 경과년수별 건축물현황 1부.
- 4) 배치도 1부. 끝.

위 치 도



경과년수별 건축물 현황

